

特許登錄出願·明細書作成要領

電子·電氣部門

〈中〉

—承 前—

2. 明細書作成上の 基本原則

張 龍 植

7. 一發明 一出願의 原則

〈辨理士·慶熙大教授〉

1個의 特許出願에는 하나의 發明만을 記述해야 한다는 原則을 1發明 1出願의 원칙이라고 한다(特許法 第9條). 따라서 1개의 명세서에 2개의 발명을 기술하는 것은 許容되지 않는다. 「物件의 발명과 「方法의 발명」例컨데 어떤 物質을 製造하는 방법과 그것에 쓰여지는 裝置를 발명한 때 방법의 발명과 裝置의 발명은 別個의 발명이므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발명으로 출원할 수는 없다(美國, 日本 등의 制度下에서는 이것이 許容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許容되고 있지 않다).

3. 明細書作成上 要求되는 形式

명세서에는 用紙와 規格·字數와 行數·使用用語·一定한 形式이 要求되고 있다.

7. 用紙와 規格

紙質에는 制限이 없으나 規格은 가로 19cm, 세로 26.8cm(大略 18切更紙 크기)크기의 용지의 左右 1.5cm 上下 2cm의 餘白을 두고 線을 그어 그 內部에 기재한다.

L. 單項記載의 原則

L. 字數와 面數

普通 各 page에는 20行 以下로 읽기 쉬운 정도의 間隔을 維持하여 打字한다.

특허를 請求하는 權利範圍은 一聯의 文章으로 單項으로 記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說明한 1발명 1출원의 원칙과 關聯해서 「○○○하는 방법과 ×××로 된 장치」와 같이 1출원에서 2개의 權利를 청구하는 것도 許容되지 않지만 하나의 발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區分해서 특허 청구범위에

II. 用 語

명세서에 쓰여지는 용어는 한글을 사용해야 하고 技術用語와 學術用語를 사용한다. 韓國語로 表記할 수 없는 용어는 原語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를 括弧內에 併記하여야 한다. 용어의 사용은 明細書 全體를 통하여 統一的으로 사용해야 한다.

- ① 무엇……무엇과
- ② 무엇……무엇과
- ③ 무엇……무엇……등의 記載方式은 허용되지 않는다.

4. 明細書의 作成要領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등으로 項을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발명은 기술내용에 따라 여러類型이 있을수 있고 예컨대 물건의 발명·방법의 발명·化學·電氣·機械등 技術分野가 다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共通의이고 基礎的인것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訂正: 本誌 前號 16面의 本題 16行 中間
題目 ②特許出願書를 1. 特許出願書(樣式
參照)의 (1) 特許出願書로 訂正합니다.

그리고 實用新案의 명세서도 발명의 명세서와 동일하다.

명세서에는 ① 발명(실용신안)의 명칭 ② 도면의 간단한 설명 ③ 발명(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④ 특허(實用新案登錄)청구의 범위로 項을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以下 그 要領을 설명키로 한다.

7. 發明의 名稱

발명의 명칭은 그 출원의 기술분야, 審査分類, 關係文獻의 調査등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명의 내용을 一見해서 알수 있겠끔 簡明하고 要領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발명의 명칭과 직접 關係없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輕便·耐久·經濟등의 용어를 사용해서 輕便가방, 耐久靴등의 表現은 避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발명내용을 너무 간명하게 표현하려는 데서 너무 큰 概念을 발명의 명칭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 예컨대 「內燃機關의 點火栓」으로 해야 할것을 單純히 「內燃機關」으로만 한다면 分類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適當하지 않다.

8. 圖面의 簡單한 說明

명세서에는 필요할 때에는 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試驗成績表도 圖面으로 본다).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을 필요로 하므로 도면의 간단한 說明欄이 있게 마련이지만 도면이 없는 발명의 경우는 그 도면의 간단한 설명란은 마련할 필요가 없다.

이 欄의 記載要領은 前述한 바와 같다.

9. 發明의 詳細한 說明

이 란은 그 발명이 屬하는 기술분야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도록 발명의 目的·構成 및 效果를 기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A. 發明의 目的

발명의 목적을 설명할 때에는 그 解決하고자 하는 問題點, 産業上의 利用分野등을 從來의 기술과 比較하면서 설명한다. 技術解決의 問題點이란 從來技術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었던 問題點

을 意味한다. 예컨대 종래의 塗裝技術로서는 솔질·로울러칠등의 방법으로 하는 手塗의인 방법과 스프레이건으로 噴霧塗裝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할때 수도적인 방법에 의할때는 塗料의 消費는 적게할 수 있으나 多量的塗裝에는 不適當하고 또 噴霧塗裝을 하면 能率的이기는 하지만 도로의 소비를 많이 要하게 되는 缺點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도로를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短時間內에 다량의 製品을 도장하는 有利한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問題點인 것이다.

그리고 靜電塗裝法에 의하여 이러한 問題點을 是正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問題點의 해결이 되는 것이다.

문제점은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問題點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모두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 특허는 産業上 利用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許與되는 것이므로 그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를 설명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靜電塗裝法의 경우를 본다면 建築·家具·自動車·船舶工業이 그 利用分野가 되는 것이다.

문제점과 産業상의 利用분야를 종래의 기술과 比較 說明할 때는 그 기술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가장 最近의 기술과 比較하여 설명해야 한다. 比較되는 先行技術이 多數 있을 때는 그 중의 하나만을 比較하는 것으로는 不足하고 先行技術全體와를 比較해야 한다.

上記한 정전도장법의 경우에서 본다면 「솔질 기술」만을 比較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先行技術 全般과 對比說明할 때에는 그만큼 權利解釋이 明確하고 또 不測의 損害를 第三者에게 주는 경우도 없게 된다.

따라서 출원에 앞서서 先行公知技術을 조사하여 두는 것은 絕對的으로 필요하다.

B. 發明의 構成

發明의 構成을 說明할 때에는 前記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어떠한 手段을 講究하는가를 그 作用과 함께 설명한다.

즉, 機械·器具·裝置와 같은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는 그 材料·構造·機構·形狀 등을 또 方法의 발명에 있어서의 그 過程·工程條件·原料의結合·組合등을 記述한다. 圖面을 添付했을 때는 이러한 발명의 구성은 圖面中の 符號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도면의 符號順序는 설명이 展開되어 나가는 순서와 一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명 of 構成을 설명함에 있어 가장 注意해야 할 點은 그 발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不可缺의 事項에 대하여는 기술이 漏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한 構成要素를 選擇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그 理由를 설명해야 한다.

발명의 構成上 必要不可缺의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발명을 理解시키는데 必要할 때에만 한다.

발명의 구성을 설명할 때 다른 文獻을 引用해서 발명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 例를 들면, 「特許 第○○○○號에 의하여 얻어진 ○○○에 ○○○을 ○○하여 ○○○○을 製造하는 方法」과 같은 式으로 설명을 전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을 설명할 때에는 대개 그 作用도 설명하게 되는데 可及的이면 구성 다음에 作用을 설명하도록 한다. 作用은 效果와 함께 記載하여도 無妨하다. 合金과 같은 材料의 발명이나 製造方法의 발명같은 것에서 作用을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구태여 作用을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발명의 構成自體가 도면과 같은 것에 의하여 具體적으로 설명되어지는 實施例的인 것일 때는 실시예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발명의 構成要素의 기재만으로는 抽象的인 것이 되어 通常의 技術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시예를 기재한다.

실시예의 기재에는 最良의 結果를 가져오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숨김없이 되도록 많이 들어 설명해야 한다. 특히 請求範圍를 넓게 잡으려는 경우, 또는 幅넓은 발명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限定된 1個의 실시예로서는 不足하다. 예컨대 酸의 種類를 限定하지 않고 特許를 청구하는 경우 실시예로서 單純히 黃酸만을 기

재하는 것으로는 不足하고 鹽酸·黃酸과 같은 無機酸뿐만 아니라 酢酸 그밖의 有機酸을 사용해도 同一한 結果를 가져온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실시예의 기재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필요에 따라 反應物의 使用量·濃度·作用溫度·壓力·時間·反應生成物의 收得量·純度등의 具體的인 數字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실시예가 많을 때는 順次的으로 重複되지않게 差異가 나는 예만을 簡明하게 기재한다.

C. 發明의 效果

발명의 效果欄에는 그 설명에서 이루어진 特有의 效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따라서 그 발명의 구성에 의하지 않더라도 얻어질 수 있는 效果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실시예의 效果는 實施中에 기재할 것이고 발명의 效果로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는 그 방법에 의한 效果를 기재해야 하지만 製品인 物件의 效果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물건의 발명에 있어서 그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 可能하다는 것이 구성에서 설명되더라도 그것은 그 물건의 效果로는 되지 않는다.

D. 特許請求의 範圍

特許請求의 기재는 獨占的인 實施를 하고자 하는 範圍를 기재한다. 이것은 특허된 발명의 技術的 範圍를 定하는 것이므로 正確히 要領있게 기술해야 한다.

特許請求範圍가 지나치게 廣範圍할 때는 그것 때문에 拒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 範圍에는 그 발명의 구성에 있어 不可缺한 사항만을 單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特法施行令第1條).

특허청구범위의 記載形式中에 中心限定制와 周邊限定制가 있다. 前者는 抽象的인 表現에서 權利의 解釋을 擴張해 나가는 式이고, 後者는 權利의 效力範圍를 外延的으로 限定表現하는 形式을 取한다. 이에 관한 詳論은 省略한다. <계속>